

학력진단평가, 수시고사 및 원장지정특강 시행시 불참사유서 제출자에 대한 처리방침 안내

학력진단평가, 수시고사 및 원장지정특강 시행시 불참사유서 제출자에 대한 처리에 있어 운용의 내실을 도모하고 학생들 간의 형평성을 진작하기 위하여 향후 방침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1. 인정되는 불참 사유

- 병역법, 향토예비군설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동원소집에 응한 경우
- 법률의 규정에 따른 투표참가 및 국가기관의 소환에 응한 경우
- 천재지변의 경우
- 시험 및 특강 기간 및 전후 2일 내 본인 및 자녀, 형제자매의 결혼식, 본인 및 배우자의 출산일, 배우자 및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, 형제자매의 장례일이 있는 경우
- 시험 및 특강 기간 중 진단서, 진료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질병 및 사고의 경우[질병에 의한 경우 : 처방전이나 진료비, 약제비 영수증은 불인정]
- 총장 및 법학전문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교내외 행사의 참가
- 법학전문대학원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시험응시 및 외부활동참여에 의한 경우

2. 불참사유서 제출시 처리절차

- 위 1.에 열거된 사유로 학력진단평가, 수시고사, 원장지정특강에 임할 수 없는 학생은 원칙적으로 시험이나 특강 실시 전에 불참사유서를 학생지도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, 부득이한 사유로 실시 전에 제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때에는 실시 이후 3일 이내에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불참사유서 제출시에는 그에 합당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
- 법학전문대학원장은 심의를 거쳐 허가 또는 추인 여부를 결정, 통보한다.
[단, 반복되는 진단서 제출의 경우 보다 엄격한 심의가 이루어질 것임]

3. 불참사유서의 허가 또는 추인시 졸업시험 점수 산정방법

- 불참 사유서가 허가 또는 추인된 경우, 해당 시험이나 특강은 총점 또는 참여율 계산에서 배제된다.
- 단, 2020년 이후 시행되는 시험 및 특강들에 있어 총점이나 참여율 계산에서 배제되는 불참사유서의 허가 또는 추인은 2020년 이후부터 졸업사정까지 시행되는 시험 및 특강 횟수의 40%를 초과할 수 없다(2018, 19년까지 소급적용하지는 않음).
- 위 40% 계산은 학력진단평가, 수시고사, 지정특강 각각의 영역에서 적용된다.

2020. 1. 16.

법학전문대학원장